

신 지적재산권의 등장과 우리의 대처 방안

金 允 培

金允培 特許法律事務所

I. 신 지적재산권의 등장

지적재산권은 유체재산권과 대칭되는 무체재산권으로서 인간의 정신적이고 지능적인 창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이용권을 지칭한다.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개념은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는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세분되어 왔다.

과학과 산업의 발전은 종래의 지적재산권 개념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의 기술(emerging technology)을 등장하게 하였고 이에 대한 권리보호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 지적재산권이다.

최근 몇년동안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부문에서는 질적인 향상과 함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외국과의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또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제도를 先進國型으로 보완정비하여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점차적으로 그 발전을 가속시키고 있는데 연유한다.

우리나라에서 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지난 1986년 6월 한·미 양국간에 지적재산권 관련 양해각서의 작성 이후로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강화등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의 철저한 보호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반도체칩·영업비밀등 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보호법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연내 영업비밀보호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칩 회로배치설계 보호법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균형(수준)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87년 물질특허의 도입으로 시작된 지적재산권의 개방화 추세는 일부 의약특허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15년~20년), 미생물특허의 광범위한 인정과 미생물기탁에 관한 국제조약인 부다페스트조약 가입,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제정, 저작권법의 개정과 UCC가입등으로 폭넓은 특허보호 뿐만아니라 외국인의 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국인의 그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호하기 시작했고 또 그 보호기간도 상당히 연장되었다.

한편, 영업과 분리한 商標 자체만의 도입을 인정하여 상표교류의 문호를 활짝 열었고, 부정경쟁방지법의 대폭 손질과 종래 貿易去來法의 對外貿易法으로의 조정 개편에 의하여 위조상품의 국제거래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국제적으로는 WIPO와 GATT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와 각국의 제도상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現在 主要先進國에서 대두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과제는 기존의 特許, 商標등과 아울러 새로운 知的創作物, 예를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설계, 유전공학기술등의 尖端技術을 어떻게 保護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추세이며 美·日에서는 이미 반도체칩에 관한 保護法을 시행하고 있다.

WIPO는 1991년 특허법 통일화 조약 체결을 위한 전문가 회의와 외교회의등을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고 아울러 상표제도 통일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와는 별도로 아직까지 「니스」분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다수의 국가가 자국고유의 상품 분류제도를 버리고 국제상품분류(「니스」협약에 의한) 채택 움직임이 활발하다.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 (TRIPS 협상)에서는 WIPO와는 별도로 특허제도 통일화를 위한 협상이 계속 추진중인 바, 특허의 보호대상, 기간 및 시행 절차와 분쟁해결 절차등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또한 TRIPS에서는 특허제도 개선과 함께 영업비밀 (trade secret) 보호와 위조상품 교역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기류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對外貿易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방을 지연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불특특허의 조기도입으로 인하여 정밀화학 업계가 겪고 있는 로열티 부담증가등의 어려움과 상표도입의 완전자유화에 따른 과소비 현상 촉진등의 문제를 살펴볼 때 충분한 분석과 사전대대책이 없는 신중하지 못한 개방은 관련업계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은 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시행과 함께 내국인의 프로그램등록이 활발해졌고 소프트웨어 침해사태가 감소하고 가속화된 정보화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 의욕고취로 산업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시장이 화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시행되어 소프트웨어 조달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미국 기업에 소급관리를 부여하는 각서교환으로 인해 한·미 기업간에 소프트웨어 분쟁의 사태가 감지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야와 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분야에서 완비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여타 첨단분야에 대한 보호제도는 현재 입법중이거나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한 단계이다.

반도체칩의 회로배치설계 (mask works) 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일본등 일부 선진국에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WIPO에서도 집적회로 보호조약을 추진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1월 상공부를 입법 주관부서로, 특허청을 등록집행기관으로 정하여 올해안으로 입법, 1992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영업비밀 (trade secret)은 미국의 경우 별도의 입법으로, 서독등 일부 EC국가들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도 영업비밀보호의 不要論의 입장에서 방침을 바꾸어 작년 6월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이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청에 영업비밀보호 연구팀을 설치하여 상

당한 연구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서독, 스위스, 일본등과 마찬가지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통신, 인공위성을 통한 방송, 케이블 TV, 인공지능, 캐릭터 (만화 도형등) 보호와 첨단생물보호권 문제도 국제적인 보호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어 이 분야의 개방도 머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첨단분야의 기술은 그 보호제도의 수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추어 상당히 뒤져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이 시급히 요망된다.

II. 반도체칩 보호

오늘날 산업사회가 정보화, 소프트화됨에 따라 독창적인 지식과 기술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게 되고 기술자체도 거래의 대상으로서 상품화되어 국가 경제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반도체 (특히 칩의 회로배치 설계기술) 등 첨단 기술산업에 응용되는 지적재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서 탄생한 반도체칩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미·일등 반도체 선진국들의 국내입법과 1989년 5월 국제조약의 채택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됨에 따라 세계 3위의 반도체 생산대국으로 급부상한 우리나라로서도 국내입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 반도체칩 보호법의 제정

1) 반도체칩 보호의 개념

반도체칩 보호란 반도체 회로기판위에 회로소자 및 배선을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배치하는 방법인 배치설계 (lay out design)를 하나의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영업비밀 등과 함께 기술혁신에 따른 지적재산권 개념의 확대로 등장한 신 지적재산권의 한 분야이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제조과정 중 기능 및 회로설계에 관한 기술과 제작 및 조립에 관한 기술은 특허법 등 기존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어 왔으나 배치설계 관련 기술은 그동안 법적 보호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반도체 집적회로가 처음 제조될 당시 하나의 반도체칩에 들어가는 소자수와 배선은 그렇게 많지 않았

으므로 배치설계에 관한 기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으나 집적도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배치설계에 들어가는 노력과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배치설계의 중요성과 그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2) 반도체칩 보호법의 제정배경

반도체칩 보호법도 반도체 산업의 중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미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무단복제 행위가 성행하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3년 정도의 기간과 막대한 투자를 들여 개발한 칩이 일본에서는 회로설계와 포토마스크 제작 사이의 배치설계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6개월도 안되어 값싼 복제품이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회에서는 칩 제조과정상 꼭 필요한 배치설계가 막대한 자본과 시간 및 고도의 기술이 소요되는 반면, 무단복제의 형태로 쉽게 침해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도체 집적회로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투자비용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도체칩 배치설계의 법적보호를 강구하기 시작, 6년여의 작업 끝에 1984년 11월 8일 저작권법에 반도체칩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기존 저작권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2. 국제적인 입법동향

1) 선진각국의 입법동향

1984년에 채택된 미국 반도체칩 보호법이 상호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일본, EC등 주요 선진국들도 국내입법을 서두르게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미국의 입법동향에 영향을 받아 1984년 10월에 산업구조심의회 정보산업부회에 반도체칩에 관한 법적문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미국에서의 토의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비롯한 입법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으며 그에 따라 통산성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고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유럽에서 반도체칩 제품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1986년 12월 11일 EC지침(EC directive)이 마련됨으로써 구체화되었으며, 동 지침에 따라 영국, 서독, 프랑스, 덴마크 등 EC 회원국들은 미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잠정적 보호시한인 1987년 11월 7일까지 국내

법을 제정하였다.

2) GATT/UR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상

GATT에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1986년 9월 폰타 델에스터 각료선언에 의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교섭항목으로 채택된 이후이며, 반도체칩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도 동 협상의 의제로 포함되어 있다.

미국 등이 자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GATT 내에서 새로운 다자간 규범을 제정코자 하는 것은 WIPO, UCC등 기존의 국제조약이 지적재산권의 많은 부분을 협약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보호범위,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할 뿐 아니라 분쟁해결 절차가 결여되어 무역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TRIPS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로는

첫째, 반도체칩 조약(일명 워싱턴조약)의 보호기간이 적절한지의 여부

둘째, 보호기간이 짧고(8년)강제 실시권의 변동이 용이한가의 여부

셋째, 보호대상인 반도체칩을 사용한 상품에 대한 보호여부와 선의의 취득자 보상의무의 문제 등이다.

3. 반도체칩 보호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반도체칩 보호에 관한 국내입법의 필요성은 크게 국내산업측면과 통상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내산업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989년말 현재 생산 45억불, 수출 40억불을 기록하여 日本, 美國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반이 취약한 반도체기술, 특히 설계 관련기술도 불완전 급속한 기술축적이 예상되고 있어 배치설계 기술의 향상에 따른 국내입법을 통해 개발된 배치설계의 거래상 rule을 확립함으로써 선의 취득자의 보호는 물론 권리보유자의 권리남용으로 부터 국내 관련업계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등 주수출시장에서의 국내업체의 권리보호 필요성도 점차 증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상측면에서는 지난 1986년 7월 한·미간 양해각서에서 반도체칩 보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하기로 합의한 이래, 미국은 한미무역실무회담 및 지적재산권 협상등에서 반도체칩 보호관련 진전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을 뿐 아니

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입법 일정제시에 대해 조기입법 및 보호수준 재고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아울러 워싱턴 조약의 채택으로 배치설계가 새로운 지적재산권으로 공인되고 우리나라도 조약채택에 찬성함으로써 조약가입을 위한 국내 입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4. 반도체칩에 관한 국내입법의 기본방향

반도체칩 보호관련 국내입법에 있어서 가장 크게 염두에 둘 점은 배치설계 기술수준등을 포함한 국내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입법시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 등 국내여건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외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다자간 보호규범으로서 우리나라가 지속받을 수 밖에 없는 워싱턴 조약내용과 GATT/UR 협상 결과가 있으며 미·일 등 선진 입법 예와 한·미 통상관계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은 권리자와 제3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장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법제가 권리자의 이익보호에 치우쳐 제3자의 이익보호에 소홀한 점을 참고하여 국내 입법시에는 이러한 불균형한 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등록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권리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선의의 취득자의 보호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창작자, 제조업자, 사용자, 일반 공중의 이익이 균형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우리나라에서 아직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던 데이터 베이스(data base)산업은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처리산업과 함께 향후 핵심산업이 될 정보산업의 중요 요소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데이터 베이스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1. 외국의 DB 보호제도

외국에서 데이터 베이스는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다.

1978년 미국의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NTU)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데이터 베이스는 편집저작물이며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고 컴퓨터 기억장치에 입력하는 것은 복제의 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개별적인 자료가 아니고 자료가 체계화된 것이므로 출력된 개별적인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권리침해가 되지 않으나, 데이터 베이스 상당부분을 출력하여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얼마만큼 출력할 경우 저작권침해가 되느냐 하는 것은 공정사용(fair use)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일본의 경우는 1986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데이터 베이스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데이터 베이스의 公表라는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데이터 베이스 저작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데이터 베이스를 유선으로 송신할 경우를 예상하여 유선송신권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이외의 국가에 있어서도 데이터 베이스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예시하거나 데이터 베이스보호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국가들이 최근들어 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데이터 베이스 산업이 유치단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의 데이터 베이스를 보호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우리나라의 데이터 베이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나 제작에 기여한 사람을 충분히 보호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에 일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대두된다.

2. 국내 법제도하에서의 DB 보호

데이터 베이스는 「컴퓨터내에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정보를 검색, 처리, 가공, 축적할 수 있도록 한 정보의 집합체」로 정의되고 있다.

데이터 베이스는 정보의 수집, 선정, 체계의 설정, 정보의 분석, 가공 및 정보의 축적등의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다.

현행법상 데이터 베이스는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먼저 저작권법상 데이터 베이스는 정보의 집합체로서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 바 저작권법은 편집저작물에 관하여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의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는 창작성이 없으나 정보의 검색방법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데이터 베이스 서어비스가 컴퓨터 터미널을

통하여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의 데이터 베이스의 정의가 적합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상 데이터 베이스의 공표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데이터 베이스는 컴퓨터 내에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에 그 특징이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게 되는 바,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지난 1987년 7월 시행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복제등 저작권 침해를 그런데로 막아 왔으나 구체적인 구제수단이 부족, 무단복제 방지효과가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民·刑上의 救濟手段을 다양화하고 이를 강화시켜 무단복제를 보다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을 고치고 3백만원의 벌금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침해행위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가압류, 가처분제도의 보완 및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중이다.

特許法상 特許는 「自然의 法測을 이용한 技術의 思想의 創作性으로서 高度의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1984년 11월 특허청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審査基準」을 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등 컴퓨터 관련 발명을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 베이스는 정보의 검색방법에 독창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技術의 思想의 창작 범위에 속하고 나아가 新規性, 進歩性, 産業上의 利用可能性의 特許要件을 갖춘 경우에는 특허로 등록함으로써 특허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III. DB 보호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의 대처 방안

최근 미국등 선진국은 산업분야의 신 지적재산권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우리에게도 이와같은 형태의 보호를 요청해 오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WIPO, GATT의 UR협상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의 입장에서 선진국의 입법형태 또는 다른 입법형태를 취할 것인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결정할 단계에 와 있다. 또한 국내 데이터 베이스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입법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 베이스를 저작권 형태로 보호할 경우에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문화발전에는 기여하도록

할 수 있으나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입법형태는 기술의 조기공개, 강제실시권 허여, 짧은 보호기간등 전반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성격의 특별법 형태가 바람직하다. 특히 저작권으로의 보호는 국내의 데이터 베이스 산업이 취약하다는 점, 향후 상당기간 데이터 베이스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등에 미루어 보아 동분야의 선진국 종속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IV. 영업비밀 (Trade Secret) 보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아니한 영업상 기밀로 독창성과 재산적 가치를 갖는 유형·무형의 기술내지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아직 없으며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로 대별된다. 기술정보에는 公式과 樣式에서 부터 기술개발 과정상 실패한 자료까지 포함되며, 경영정보는 고객리스트, 거래처, 제조판매계획, 원가표, 선전 아이디어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영업비밀은 원료배합법, 사무실 관리기법 등과 같이 산업재산권상의 권리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산권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1. 각국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 및 최근동향

1) 미국

1979년 "Uniform Trade Secret Act(통일영업비밀법)"을 제정하여 각주가 영업비밀을 보호함에 있어서 채택하도록 모델법을 제시하였다. 1990년말 현재 20여개 주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이 모델법의 특징은 민사적 구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일본

최근까지 일본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론이 지배적이었으나 1990년 6월 29일 개정, 공포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변화는 UR의 TRIPS 협상에서 대립하는 개도국의 입장에 대응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3) GATT-UR TRIPS 협상의 동향

GATT-UR TRIPS 회의에서 미국, EC, 일본등의 국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정 초안을 제안하였는데 반하여 브라질, 인도등 개도국은 지적재산

권은 GATT 체제내의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조상품 교역에 대한 국경간 절차만은 GATT 규정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WIPO에서 취급, 각국의 국내법에 맡길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상은 선진제국의 주장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

2. 국내입법의 기본동향

현행법상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법규정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 비밀누설 조항, 특허법 제34조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보호 조항 등이 있으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영업비밀 보호는 미국·EC가 88년 UR등에서 신 지적재산권으로 추가할 것을 추구하고있던 것으로 1988년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발간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보고서에서 보호가 불충분한 47개국중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에 관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은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그러나 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의 보호가 기업의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이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허청은 지난 1988년 7월 영업비밀보호 연구반을 설치한 이후 자료수집과 세미나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 특허법내에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형법, 민법등에 관련조항을 삽입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용면에서는 무체재산권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배타적 권리는 인정하지 아니 하되 침해행위를 규제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3. 우리의 대응방안

1) 적용과 준비

영업비밀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우리 실정에서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실시에는 그 적용과 준비가 필요하다.

영업비밀의 보호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선진국 기술예속현상을 초래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독립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각 기업은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투자 개발에 노력하며 타인의 영업비밀을 존중하여 분쟁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2) 제도의 연구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각국의 영업

비밀보호제도를 비교연구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제도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국제동향의 주시

UR-TRIPS 협상의 결과에 따른 국제동향에 대비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先進諸國의 對外 戰略을 研究·分析하여 구체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정부당국은 국제적 동향을 신속하게 각 기업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V. 위성통신 및 Cable TV 등 기타분야 지적재산권

1. 위성통신 및 Cable TV

위성통신 및 cable TV는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과 관련하는 것으로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통신위성 및 유선에 의한 프로그램의 송신은 국가간에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각국정부는 이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의 부족으로 현실에 맞는 국제적 원칙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2. 생명공학

생명공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보호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은 생명체를 다루므로 특허법에 관한 전통적 개념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법적보호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며 각국마다 보호범위와 보호법 자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점을 해결하기 위해 WIPO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은 보호범위를 확대하려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자국산업에의 영향 또는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 보호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VI. 결 론

국제적으로 급변하는 첨단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흐름은 급기야 우리로 하여금, 머지않아 우리 산

업계의 사정이나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분야를 완전히 개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기업을 망라한 각계의 적절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스스로 국제기구등의 실무와 회교회의 등의 활동에 능동적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최신 정보를 입수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부처에는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민간업계가 새로운 변화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정부보유의 일부정보를 개방)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업계의 전문가 양성이야말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발굴과 육성에도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고도로 전문화된 첨단기술보호는 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기술+법률)을 가진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 핵심분야인 특허등 산업재산권 부문의 활성화와 첨단 신기술의 소화를 위해 관련업체 특히 전문요원과 첨단기술 관련 대리인(주로 변리사)들의 자질향상과 자격요건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계일각에서는, 첨단 전문분야인 변리사 업무를 일반 변호사들이 변리사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자동적으로 첨단기술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사실만 보아도, 우리 정부와 지도층 인사의 첨단기술보호에 대한 의지(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관련 기술분야의 지식과 법률지식을 다 함께 갖춘자에게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여 첨단기술 보호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기업도 첨단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노력및 해외출원으로 해외시장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 기술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정부에 기대하기 보다는 스스로 정보수집 능력과 첨단기술 판별능력을 키워야 한다. 개별기업의 힘으로 안되는 것은 관련조합, 협회를 통해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정보팀을 구성하고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외국 첨단기술의 선별도입과 기술개발이나 개량기술을 해외 시장에 권리로서 설정해 놓는 능동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18)

筆者紹介



金 允 培
1943年 5月 29日生
1966年 2月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졸업
1974年 6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수료(도시계획학 석사)

- 1973年 4月 변리사 개업(김윤배 특허법률사무소)(현)
- 1975年 10月 대한 서울상공회의소 공업소유권 상담역(현)
- 1977年 1月 국제공업소유권연구소 소장(현)
- 1980年 3月 대한변리사회 국제이사
- 1984年 3月 아시아변리사회(APAA) 한국협회 이사 및 APAA본부 상품모조방지 특별위원회 한국대표위원(현)
- 1984年 10月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현)
- 1985年 6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품모조방지위원회(ACCK) 부위원장
- 1987年 7月 특허청 부정경쟁심의위원회위원
- 1988年 3月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 1990年 1月 국제공업소유권 보호협회(AIPPI) 한국협회 부회장 및 회장대행(현)